



제342회 임시회
2015. 9. 2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8월 24일
-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3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아동들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, 가정위탁 활성화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과 아동복지전담기관(아동보호전문기관, 가정위탁지원센터) 설치 근거 마련

4. 주요내용

- 책무 (안 제3조)
 - 학대아동의 발견·보호·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
-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(안 제5조)
 -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·운영
 - 비영리법인 지정·위탁 가능
- 전담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(안 제7조)
 -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감안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법인 선정
- 비용지원 (안 제11조)
 -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가능

5. 검토의견

□ 조례안 제정 배경

- 동 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상위법령인 「아동복지법」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,
- 아동학대 신고·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,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를 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가정위탁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규정한 동 조례 제정은 시기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□ 검토 의견

-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- **안 제4조**의 경우 아동학대 발견 신고대상 기관을 '경찰관서'에 국한하여 규정함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1항에는 신고대상 기관을 '아동보호전문기관' 또는 '수사기관'으로 규정하고 있음.
 - 이에, 경찰관서만을 신고대상 기관으로 명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※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

- **안 제5조, 제6조**의 아동복지전담기관(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,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)의 설치 및 업무 조항은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, 제46조, 제48조, 제49조에 따라 설치·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**안 제11조**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(사업비, 운영비 포괄 개념)을 아동복지 관련 기관,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충청도 유사 조례인 「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서는 관련 기관, 단체, 시설 등에 사업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.
 - 동 조례안 제11조에 따른 비용지원 사업은 「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(여성정책관실 소관) 제11조에 따른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됨. 즉, 유사사업에 대해 사업 운용 부서에 따라 지원수준의 차이(형평성 문제)가 발생할 수 있음.
 - 따라서, 조문 용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, 동 조례안에 사용된 '필요한 비용'의 개념 및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지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※ 「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
 제11조(사업비의 지원) 도지사는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- 그 밖의 조항들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며, 입법예고를 통해 민간 의견의 수렴 절차를 거쳐 규정된 바, 동 조례안은 법리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별첨

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학대 관련 현황

아동복지전담기관 현황

○ 아동보호전문기관

구 분	개소일	기관장	종사자	소재지역	관할시군	'15년 지원예산
계	3개소		36			1,475,536천원
충청북도아동 보호전문기관	'00.09.25	류경희	15	청주시	청주, 증평, 진천, 괴산, 음성	614,807천원
충북북부아동 보호전문기관	'04.10.26	나문규	12	제천시	충주, 제천, 단양	491,845천원
충북남부아동 보호전문기관	'06.12.08	정국명	9	옥천군	보은, 옥천, 영동	368,884천원

○ 가정위탁지원센터

구 분	개소일	기관장	종사자	소재지역	관할시군	'15년 지원예산
충청북도가정 위탁지원센터	'03.3.20	최명옥	7	청주시	11개 시군	297,154천원

아동학대 현황

(단위:명)

구 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.6월	비고
신고·접수 총계	556	578	626	364	
아동학대사례	437	387	455	240	
잠재위험사례	31	16	62	43	
일반사례	88	175	109	60	
조사진행 중 사례				21	

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사업 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보조비율	국비	도비	계
계		737,768	1,079,922	1,817,690
학대피해아동 치유캠프	도비 100%		20,000	20,000
아동학대예방 교육·홍보	도비 100%		25,000	25,000
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	국비50%, 도비50%	737,768	737,768	1,475,536
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	도비 100%		297,154	297,154

※ 매년 국·도비 확보하여 운영 중('15년 기확보, 추가 비용 미발생)